

【 민법총칙 】

1. 신의성실의 원칙 및 그 파생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실효의 법리는 공법관계 가운데 권력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
- ② 계약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 대해서도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③ 입원계약상 병원은 입원환자의 휴대품 등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줄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 ④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 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의 보수 청구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될 수 있다.

2. 의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 ③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④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⑤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 의미 외에 그 법률적 의미까지 이해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3.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②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에게 영업의 종류를 특정하여 영업을 허락하였더라도 허락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관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다.
- ④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 ⑤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으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믿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4.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법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초과행위 허가결정의 효력은 장래의 처분행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에도 미친다.
- ③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자로 기재된 자에 대한 실종 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이미 실종선고가 확정된 부재자에 대해 새롭게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최초의 실종선고는 효력을 잃고 새로이 확정된 실종선고가 효력이 있다.
- ⑤ 부재자로부터 재산의 처분권한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라도 법원이 부재자의 생사불명을 이유로 그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의 처분행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법인의 사무집행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②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 ③ 법인은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청산 사무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 ④ 「민법」 제56조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을 때에는 양도나 상속이 허용된다.
- 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

6. 법인 아닌 사단 甲과 그 대표자 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甲은 청산 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②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甲은 그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乙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甲을 대표하여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甲이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무효이다.
- ④ 乙이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丙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그에 따라 丙이 포괄적 수임인으로 행한 대행행위는 원칙적으로 甲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 乙이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 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7.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독립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②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있다.
- ③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 ④ 「민법」상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8.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중중의 규약 중 ‘중중 회장은 종손으로 한다’는 중중 회장 자격 제한 조항
- ㄴ. 단속규정인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지역주택조합과 통정하여 체결한 조합 가입계약
- ㄷ.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에 직계가족 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산재 유족 특별채용 약정
- ㄹ.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도박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수가격이 경매부동산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해야 한다.
- ③ 당사자가 공박, 경술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결과 제3자와의 계약관계에서 입었을 불이익을 면제 받는 것은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급부로 평가된다.
- ⑤ 매매계약이 약정된 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10. 甲은 2025년 3월 15일 자기 소유 X토지와 Y토지 중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는데, 증여세를 면하고자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2025년 3월 20일 X토지에 대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甲과 乙 모두 토지의 지번을 착각하여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의 각 지문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기〉-

- ㄱ. 甲과 乙이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乙은 Y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ㄴ.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 ㄷ. 2025년 4월 1일 甲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ㄹ. 2025년 5월 1일 乙이 丁과 Y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과 丁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① $\neg$
② $\neg, \vdash$
③ $\neg, \vdash$
④ $\vdash, \vdash$
⑤ $\vdash, \vdash, \vdash$

11.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액을 표시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삼았던 경우, 그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민법」 제109조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②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주장과 증명책임은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있다.
- ③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④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 ⑤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표의자가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상대방이 그 제3자의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닌 한 표의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12.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러한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 ②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더라도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③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도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 ④ 대리와 사자(使者)의 구별은 본인의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를 판단할 때에 상대방의 시각, 즉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⑤ 「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써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현명(顯名)은 묵시적으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해야 한다.

13.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기〉-

- ㄱ.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ㄴ. 임의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ㄷ.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ㄹ.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neg$, $\perp$
② $\neg$, $\perp$, $\vdash$
③ $\neg$, $\vdash$, $\equiv$
④ $\perp$, $\vdash$, $\equiv$
⑤ $\neg$, $\perp$, $\vdash$, $\equiv$

14.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바 없는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甲 소유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매매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ㄴ. 甲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丙은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민법」 제135조 제1항을 근거로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甲이나 乙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ㄹ. 甲이 丙에게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매매계약을 해약해 달라고 요청하고 또 그 금원반환기일에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기일의 연기를 구한 경우,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乙의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 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15. 甲은 2025년 4월 1일 乙(17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2025년 4월 16일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甲은 乙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하여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ㄴ. 丙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이 성립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ㄷ. 甲이 X토지에 대한 丙과의 매매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더라도, 乙이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착오한 바 없었다면, 甲은 자신의 착오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16.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는 적용이 없다.
- ② 대리행위 상대방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에서 제3자는 당해 표현대리 행위의 직접 상대방 외에 그러한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한다.
- ④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되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더라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 ⑤ 대리인이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다.

17.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무효인 매매계약이 사후(事後)에 적법하게 추인된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②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대리인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 그 가압류권자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 ⑤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18.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로부터 매매대금 5억 원 중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甲에게 협력의무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 ②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乙이 잔대금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乙은 甲에게 잔대금 미지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X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로 확정된다.
- ④ 甲과 乙의 매매계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로부터 받은 계약금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⑤ 甲과 乙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 대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9.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에도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어 다시 추인하는 것은 가능하다.
-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 ㄷ.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ㄹ. 가분적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더라도 일부에 대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20.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자가 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④ 강박에 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는 주장 속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당연히 포함된다.
-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의해 생긴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변제를 하였다면, 변제 당시 그것이 주인이 아니라고 표시하였더라도 법정주인에 의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21.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증여와 같이 상대방에 의한 대가적 의미의 재산 관계 출연이 없이 당사자 일방의 급부만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우, 제3자가 처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소유자가 무효인 그 처분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통정허위표시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책임있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해 줄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2.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해제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다.
- ④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말일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된 차임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③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수익자는 취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더라도 그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④ 현존하지 않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에 발생한다.

2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②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③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원본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같다.
- ④ 특정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으로 제한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가 소멸하도록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⑤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금전채권자가 그 후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취하서를 제출한 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25. 甲은 2020년 10월 23일 乙과 X건물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이 2021년 10월 23일 공사를 완료하여 X건물을 乙에게 인도하였으나, 乙은 X건물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22년 11월 10일 甲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청구하고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에 대한 甲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② 甲의 공사대금 지급청구가 받아들여져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 ③ 위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이 종료되기 전 甲이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해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 甲이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채 위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이 종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甲이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재판상 청구를 하더라도 그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⑤ 甲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여 乙이 그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였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다.